

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16236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1. 22.

제 출 자 : 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,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·우주비행체·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자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인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, 앞으로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.

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1조(과태료)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0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·우주비행체·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제22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벌칙 및 양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第21條(罰則) 第11條第1項의 規定</u> <u>에 위반한 者는 500萬圓이하의</u> <u>罰金에 處한다.</u>	<u>제21조(과태료) ① 제11조제1항을</u> <u>위반하여 제10조에 따른 검사를</u> <u>받지 아니한 항공기 · 우주비행</u> <u>체 · 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</u> <u>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</u> <u>태료를 부과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</u> <u>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</u> <u>주항공청장이 부과 · 징수한다.</u> <u><삭 제></u>
<u>제22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</u> <u>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</u> <u>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</u> <u>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</u> <u>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</u> <u>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</u> <u>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</u> <u>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</u> <u>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</u> <u>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</u> <u>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</u> <u>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</u> <u>하다.</u>	